## 치안산업진흥법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29 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 : 윤재옥 · 김기웅 · 이인선

강대식 · 서천호 · 최보윤

김성원 • 권영진 • 엄태영

김미애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 치안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피싱(Phishing), 딥페이크(Deepfake) 범죄 등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 중심의 범죄예방 및 대응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치안 유지에 한계가 있음.

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치안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첨단 치안기술의 연구개발, 치안장비의 첨단화,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,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치안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며,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다.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7조).
- 라.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품질 향 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에 관한 표준 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와 그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함(안 제8조).
- 마. 경찰청장은 우수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안 제9조).
- 바.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,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 치·활용 및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을 실시할 수 있음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.
- 사. 치안사업자는 치안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 장의 인가를 받아 치안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 6조).

####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치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치안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치안산업"이란 치안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, 개발, 설계, 유통, 연구개발, 정보제공,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3. "치안사업자"란 치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다.
- 4. "치안기술"이란 치안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.
- 5. "치안장비"란 치안 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의 책무) 국가는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 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

한다.
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
  - 2. 치안산업의 국내·외 동향,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
  - 3.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·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  - 4.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, 연구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
  - 5.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
  - 6.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
  - 7. 치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
  - 8. 그 밖에 치안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・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치안산업진흥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 여야 한다.
  - ② 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·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  - 1. 치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수립
  - 2. 치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
  - 3. 치안산업 특성화 대학 · 대학원 · 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 · 운영
  - 4. 치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
  - 5.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 양성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
  - 2. 제1항제3호에 따른 치안산업 특성화 대학·대학원·대학부설연구 소
  - 3. 제1항제4호에 따른 치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

개발 및 보급 사업을 하는 자

-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・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치안장비등의 표준화) ①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(이하 "치안장비등"이라 한다)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.
  - 1. 치안장비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
  - 2. 치안장비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 · 연구 · 개발
  - 3. 그 밖에 치안장비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
  -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 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,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 한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9조(우수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) ① 경찰청장은 우수한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치안사업자의 신고) ①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안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.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해외시장 진출 지원)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치안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
  - 2. 치안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
  - 3. 치안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유치
  - 4.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 제공
  - 5.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
  - 6.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- ②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·활용 촉진) 경찰청장은 치안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·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  - 1.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·활용하는 국내 치안기술 개발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
  - 2. 그 밖에 해외 우수 전문인력 유치·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제13조(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)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산업 관련 외국의 우수 연구개발기관(이하 "해외연구기관"이라 한다)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있다.
  - 1.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치안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지원
  - 2.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·훈련 및 고용 지원
  - 3.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국내 입지 지원
- 4. 그 밖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(치안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·관리)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관련 시장 동향, 치안사업자 현황,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등 국내외 치안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·분석하고,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치안산업 관련 통계조사) ①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고 치안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치안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.
  -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치안 관련 단체의 장 및 치안사업자에게 치안산업 및 치안장비등과 관련된 인력현황, 경영현황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

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범위, 대상 및 주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한다.
- 제16조(협회) ① 치안사업자는 치안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안산업진흥협회(이하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  -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  - ③ 협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 -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 - 1. 치안장비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
  - 2.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· 분석
  - 3. 치안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
  - 4. 치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
  - 5.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
  - 6. 치안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 지원
  - 7. 규제 개선 일괄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
  - 8.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  - ⑤ 경찰청장은 협회가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

-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⑥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,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7조(지도·감독) ① 경찰청장은 협회를 지도·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,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・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- 제1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, 치안산업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9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8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,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